



경상북도교육청



특허청

업 무 협 약 서

경상북도교육청과 특허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발명체험교육관 설치·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지원함으로써, 지역의 혁신인재를 발굴하여 차세대 혁신가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사항)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.

1. 특허청은 발명체험교육관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, 체험·심화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발명체험교육관의 지속적·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.
2. 경상북도교육청은 발명체험교육관 설치에 필요한 부지 및 건물을 제공하고,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예산, 인력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.
3. 양 기관은 발명체험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조례 또는 운영 규정 제정, 교육운영 방향, 조직 구성 등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.
4. 기타 양 기관이 합의에 의해 결정한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.

제3조(협력업무 추진) 제2조의 협력사항에 의한 업무를 추진 시에는 양 기관이 보유한 인력, 시설 및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,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교환 또는 공유한다.

제4조(실무협의회) 양 기관은 제2조의 협력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협의조정 및 비밀유지) 제2조 규정에 따른 협력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별도로 협의·처리하며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정보를 본 사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효력발생 및 협력기간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상대 기관의 서면 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위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1월 15일

경상북도교육청

교육감 임종식

특 허 청

청장 박원주



